

## 공천위원회 규정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공천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1. 총회에서 맡겨진 공천 사무만을 전담한다.
2.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결원은 본 위원회가 보선한다.
3. 총회 폐회 기간 중 생긴 긴급한 인선 공천도 본 위원회가 한다.

### 제3조 (조직과 임원)

본 위원회는 각 노회가 다년간 총회 총대로 피선된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 1인(비 총대도 가함)으로 조직하되, 총회 실행위원회가 시행 원년에 정한 것을 기준으로 목사, 장로 동수로 한다. 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1인, 서기 1인

### 제4조 (회의)

1. 본 위원회는 총회 2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정기회로 모이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로 수시 소집한다.
2.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 개최 중에도 그 임무 수행상 회집할 수 있고 위원은 총회 당연직 언권위원이 된다.

### 제5조 (공천 업무)

1. 공천 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기준을 세우고 공천한다.
2. 공천 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각 상임위원회는 여성 1인 이상 공천한다. 단 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공천위원회, 한신학원 이사회는 제외한다.
4.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공천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업무만 맡을 수 있으며 기존의 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5. 공천된 인선은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총회 폐회 기간 중 공천된 인선은 총회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7. 공천업무 시행세칙을 별도로 둔다.

#### 제6조 (임기)

1. 공천위원회 임기는 노회에서 선임한 첫 공천위원회 정기회로부터 2년 후 공천위원회 정기회 직전까지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 목사는 장로로, 장로는 목사로 교체한다.
2. 노회 공천위원이 결원되었을 시에는 해 노회가 보선하고 전임자의 임기를 계승한다.

#### 제7조 (개정 및 시행)

1.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 제청하거나 총회가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총회 통과 후 이를 시행한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2002년 9월	제87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 총회 공천업무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총회 공천위원회 규정에 따른 공천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천업무)

1. 공천업무는 지역과 기능을 참작하여 공천 규정을 살피 공천한다.
2. 공천 업무는 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 총대 수를 참작하여 공천한다.
3. 정기 공천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총회 안전심의부 부원
  - 2) 총회 사업부서 및 각 위원회 위원과 이사
  - 3)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임시위원
  - 4) 총회가 공천 위임한 기타 위원

### 제3조 (공천 자격)

1. 총회의 위원 공천 대상은 목사, 장로를 원칙으로 하나, 특수분야에는 목사, 장로가 아니어도 위원이 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대원이 아니어도 공천될 수 있다. 단, 무임목사는 공천에서 제외된다.

### 제4조 (공천 기준)

1. 총회 상임위원회 및 대외연합기관 위원 공천은 1회 연임까지 가능하고, 3선일 경우에는 공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계속 공천할 수 있다. 단 노회에서 1인씩 공천하는 헌법위원회, 국제협력선교위원회, 생활보장제위원회, 공천위원회는 예외로 한다.
2. 동일 위원회 내의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과 위원회 추천위원의 근속기간은 연임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 추천위원 공천은 총회 전에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천위원회에 공천을 요청한다.
4. 위원회 추천위원은 총회 공천업무 법규에 의거 추천한다.
5. 위원회 추천위원 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6. 공천은 대내, 대외 1인 1부서 원칙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위원회

는 겸직하여 적임자를 공천할 수 있다.

- 1) 헌법위원회
- 2) 재판국
- 3) 선거관리위원회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7. 한신학원 이사회의 이사 공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한신학원 이사 공천은 후보자의 이력서를 받고 공천한다.
- 2) 한신학원 이사는 이사회 추천이사, 개방형 추천이사를 포함하여 1노회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 (공천 배제사항)**

1. 일방적 수혜자와 규정에 있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 위원회 및 이사회 공천을 배제한다.
2.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역자와 교회(장로)는 공천에서 배제한다. 단 교역자가 궐석인 교회의 장로는 생활보장제 의무금을 내지 않아도 공천될 수 있다.

### **제6조 (공천 결원 · 보선사항)**

1. 대내외 위원 및 이사가 사임하거나 정년이 되었을 경우 사임 처리하고 보선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명시하여 후임자를 공천한다.
2. 총회 상임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가 남아있는 위원을 변경할 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사임서를 받아야 하며 해 노회의 공천위원의 권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잔여 임기 동안 공천될 경우 초선에 해당되며 재공천될 경우 연임에 해당된다.

### **제7조 (준용)**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결의 및 공천위원회 결의로 정한 공천 기준에 따른다.

### **제8조 (개정)**

본 시행세칙 개정은 공천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시행)**

본 시행세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